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률안 발의의사 철회 규정 신설〉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40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예지 · 김소희 · 서천호 · 고동진 · 신성범 · 임종득
김상훈 · 송석준 · 백종현 · 박덕흠 의원(10인)

2. 발 의 일 : 2025. 12. 23.

3. 회 부 일 : 2025. 12. 24.

※ 의안번호 : 1554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만약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함. 나아가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법률안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는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그 찬성 또는 공동발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해당 국회의원이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발의 또는 찬성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의원이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의원인 경우나 발의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0조의2(의사표시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의의원이 1명인 경우에 그 발의의원 2.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 3. 의사표시의 철회로 인하여 해당 법률안이 제79조제1항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에 대한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한다.

현행법 제79조는 의안의 발의요건으로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¹⁾ 제90조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여 발의된 의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 1)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2) 「국회법」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발의된 의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의자(찬성자) 중 일부 의원만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되어 성립된 이후에는 동일성 유지 측면에서 발의자 제외와 같은 형식상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³⁾

이에 따라 의원이 발의된 의안에서 자신의 발의(찬성) 의사를 철회하려면 의안을 일단 철회한 후에 해당 의원을 제외하고 동일 내용의 의안을 재발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의원이 법률안 발의 후 발생하는 사정변경이나 의사의 변경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므로, 의원의 의사표시의 기회를 더 넓게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보완 사항으로 ① 개정안에 따라 일부 의원이 발의 의사를 철회한 이후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려고 하는 때에는 현행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철회요건의 산정 기준인 ‘발의의원’에 발의 의사를 이미 철회한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회사무처, 『국회의안편람 해설편』, 2024.7., p.348

②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의사표시의 철회를 반영하기 위한 의안시스템 및 입안지원 시스템의 정비 등 실무적인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